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

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①란의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소유자	성명(상호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	(전화번호:)
이륜 자동차	등록번호	차대번호
	차명	차종
	검사유효기간	부터 까지
	명령이행기간	부터 까지
※ 유의사항		
1.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2조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		
2.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·이전·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,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		

끝.

시·도지사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